

<대담>

김건식 교수 정년기념 대담

일 시 : 2019. 12. 8. (일) 15:00~18:00

장 소 : 김건식 교수 서초동 자택

대 담 자 : 노혁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옥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영신(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경훈(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문희(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녹취·정리 : 송순섭(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조교)

이정은(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인사 및 소개〉

송옥렬 : 오늘 법학연구소에서 김건식 교수님 정년을 기념해서 선생님을 모시고 지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앙대 윤영신 교수님, 강원대 최문희 교수님, 한국외국어대 안수현 교수님이 멀리서 참석하여 주셨고, 서울대에서 노혁준, 천경훈 교수님도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대 송옥렬입니다. 먼저 간단히 소감을 여쭙는 것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교수로서 지난 30년이 넘는 긴 여정을 마무리하시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정년 소감〉

김건식 : 지난주 수요일 오후 대학원 강의를 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 33년 반 동안 서울대에서만 강의하며 보냈던 터라 마지막 말을 하면서 혹시 울컥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전혀 그런 일 없이 담담하게 끝났습니다. (웃음) 연구실에 있는 책을 어떻게 옮길 것인지 아직 고민거리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전부터 그랬지만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일생을 교수로, 더구나 서울대에서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이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능력도 뛰어나지 못하고 노력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한 처지라 일생을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을 미안하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신 : 33년 반 동안 서울대에서 봉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아주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다면 한두 가지 듣고 싶습니다.

김건식 : 사실 활동이 아주 많았다고 이야기할 순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 특별히 ‘이거다’ 하는 순간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여러 가지 모멘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는 좋은 일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저로서는 좋았던 순간이 더 많았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서울대에서의 기간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 1986년 2학

기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도까지 10년 정도가 1/3을 차지하는데, 그때까지는 내실을 쌓는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학내적으로 이런저런 일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조용히 공부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밖에서 어떤 요청도 없었고, 학내에서만 지냈으니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별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생활을 한 셈이죠. 독일 뮌헨대에서 1년간, 그리고 일본 동경대에서 8개월간 미국 아닌 외국 사회를 접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기간 중의 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997년부터 2010년까지는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관련해서 입법에 관여하는 한편, 몇몇 회사에서 사외감사와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몇 가지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금융법센터를 만들고, 센터 발간으로 『BFL』을 창간한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전에는 『Journal of Korean Law』도 제가 Founding Editor-in-Chief로 창간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각종 연구프로젝트도 2000년대 초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안수현 교수도 계시고, 최문희 교수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서 여러 종류의 프로젝트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학술교류와 외국대학에서의 강의를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의 일입니다. 그 와중에 총장선거에도 두 차례나 깊이 관여하면서 학내정치의 세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나 강의에는 전혀 도움 되지 않았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조금이나마 깨칠 수 있어서 후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7년 로스쿨법이 통과되고 2008년 법대 학장에 취임하고부터는 거의 전적으로 로스쿨 업무에 주력하며 이 모든 일들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기간 동안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하며 다양한 사람을 만났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2010년 6월 학장직을 마치고 퇴직하기까지의 기간인데, 그 전 단계와는 생활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학교에 있기 마련인 여러 가지 귀찮은 업무들로부터는 대체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그 기간 동안, 말하자면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송옥렬 교수부터 천경훈 교수까지 여러 교수님들이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귀찮은 일들을 모두 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나로서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지낼 수 있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잡무에 대한 면제는 학문적인 영역에도 파급되어서 국내에서는 발표에 대한 의뢰도 짝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젠 학회에서도 사회나 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대신 국제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뜻밖에 영문발표가 늘어난 것은 국내 학계에서 조기 퇴출된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안수현 : 이제 정년을 마치고 하고 싶으신 일도 많으실 텐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건식 : 사실 그런 질문은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한 10년 전쯤에는 정년퇴직을 하면 이제 법학연구는 떠나 볼까 하는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어떨까, 역사 쪽에서는 동양사, 중국사 이런 쪽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중국어도 좀 배우고 중국에서 한 달간 살아보고 했습니다. 또 정치사상 같은 것을 잠시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잘못하면 정년퇴직을 하고도 오래 살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도 무언가 쓸모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결국 어설픈 꿈은 버리고 지금은 회사법하고 자본시장법 분야에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유익한 일을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고 나면 할 일로 한두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긴 한데, 아직 충분히 구체화 되지 않은 단계여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법학으로의 입문과 유학생생활〉

천경훈 : 저는 91학번으로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선생님께 상법 과목을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선생님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웃음) 굉장히 젊으셨을 때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법대 73학번으로 입학하셨는데, 입학 당시에 학교 분위기가 선생님의 주요 관심사는 어떤 것이었고, 또 상법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건식 : 네, 말씀을 드리자면 한이 없는데요.

천경훈 : 길게 충분히 말씀해 주십시오. (모두 웃음)

김건식 : 당시 학교 분위기는 유신 시절이라 아주 암울했습니다. 1973년 가을에는 최종길 교수 변사 사건이 있었고, 또 1974년에는 민청학련 사건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긴급조치 시대라 테모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억눌려

지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항을 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는데도 가을이면 무언가 소란스런 일이 벌어져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학교가 휴교를 하고 그래서 수업을 리포트로 대체하던 일이 반복됐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다른 학생들처럼 그 당시 정부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지만 학생운동과는 항상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비겁한 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분위기는 암울했는데도 적어도 75년까지는 캠퍼스에 낭만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없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지금은 좀 기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남녀 대학생들이 어울리는 쌍쌍파티라든지 카니발이 학교마다 있었는데, 물론 서울대에도 있었고 법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서면서는 광주사태 영향인지, 학생운동이 프로화된 탓인지 모르겠는데, 카니발 같은 건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퇴폐적인 것으로 보게 되고, 학교생활에서 일종의 금욕주의나 엄숙주의가 팽배해진 것이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법대 입학 당시에는 고등학생을 겨우 벗어난 처지라 유치한 지적 호기심에 사로잡혀있었습니다. 소위 의식 있는 대학생들이 애독하던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이런 잡지들의 과월호까지 헌책방에서 구해서, 물론 소화도 덜된 상태로 마구 읽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에는 문학 평론 쪽이 웬지 멋있게 보여서 당시 이름을 날리던 분들인 백낙청, 김현, 김윤식 이런 분들의 글을 즐겨 읽었습니다. 김윤식 교수님은 우리 1학년 때 교양국어를 가르치셨죠. 그때 그분은 세상 고민을 다 하는 듯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서 정확히 잘 이해되진 않지만 뭔가 심오하게 들리는 말씀만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그때 기껏해야 30대 후반이어서 (모두 웃음)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죠. 당시엔 소설도 많이 읽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황석영 씨가 우리가 입학하자마자 대학신문에 단편소설을 발표했던 기억이 있고, 이문구 씨라고 작고한 분이시지만 만연체의 그분 소설을 찾아 읽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간혹 논의가 됩니다만, 리영희 교수의 글들이 당시에 도 상당히 화제를 불러일으켜서 저도 몇 권 사서 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끌렸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후에 나온 그분의 자서전 비슷한 책은 아주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의 중국이나 월남전에 대한 글은 그렇게까지 감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애초부터 부르주아적 성향이 강했던 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아마 일제시대 때부터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문과 쪽 대학생이라면 영, 독, 불, 일 4개 국어는 해야 된다는 식의 지적 허영심 같은 것이 남아있

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가 뭐 학자가 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도 지식인 비슷한 흉내는 내야 한다는 욕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에는 누나 친구 중에 불어를 전공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불어를 배웠고, 1학년 겨울방학 때는 외대 일어과 2학년 여학생에게 일본어를 두 달간 배웠습니다. 사실 1학년 때는, 법대가 문리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문리대 가기가 아주 쉬웠어요. 그래서 라틴어도 배워볼까 하는 허황된 욕심에 문리대 종교학과 신사훈 교수라는 분이 뜻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라틴어 강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상당히 종교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것까지는 내가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치기만만한 시절이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법학개론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법학 수업은 2학년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솔직히 큰 재미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이 별 흥미를 못 느꼈던 학문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 몇 마디 변명을 해야겠네요. 우선 그때는 낭만적인 시대라 교수와 학생 피차간에 학교 강의에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는 분위기였고 그런 강의나마 시국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강의내용도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학설 다툼이 중심이고 현실문제와는 괴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는 유신시대니까 법이 작용하는 영역이 굉장히 좁았죠. 그러니까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정도를 빼놓고는 나머지 분야에서는 법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 적용되지 않는 법에 대한 흥미를 갖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또 당시 책 서문에는 교수들조차 판례를 구하기 어렵다는 불평을 적어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 중국법을 공부하면서 보니 중국의 법서들이 딱 그런 것 같더군요. 그러니까 중국의 현실분쟁은 다루지 않고, 미국, 독일 같은 외국의 이론 소개에 주력하고 있어서 ‘아, 이게 결국은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나라들에선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학이 발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법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굉장히 우연한 일이에요. 4학년 1학기 때 작고하신 정희철 교수님께서 가르치시던 상법연습을 택해서 들었습니다. 그 수업은 학생들의 발표로 진행되었는데, 제가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테마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개업준비행위’에 관한 것이었어요. 나름대로 국내 논문도 찾아보고 그때 배웠던 일본어 지식을 동원해서 일본 상법책도 찾아보고 해서 발표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정희철 교수님이 상당히 깐깐하신 분이데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교수님께 직접 칭찬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분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되었고, 설날에 세배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저는 사실 실천을 별로 못 했습니다. 학자로서 하는 일이 아무래도 발표의 허점이랄까, 빈틈이랄까 하는 것들을 발견해서 그런 걸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니까, 남의 발표를 들으면 ‘아,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것은 이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아지겠다.’는 식으로 말하다 보면, 칭찬을 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을 가르칠 기회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기회가 많을 테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신 : 선생님께서는 그럼 동승동에서 학교를 다니신 것인가요?

김건식 : 그렇죠. 동승동에서 2년을 다녔어요. 지금도 대학로 쪽에 가면 그 무렵의 기억이 살아나곤 합니다.

노혁준 : 학부시절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학부 마치시고서 바로 미국유학을 떠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특히 독일이 아니라 미국으로 떠나시게 되었는데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때 벌써 교수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김건식 : 사실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일생동안 그냥 승승장구하면서 탄탄대로를 걸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모두 웃음) 나름대로 수많은 좌절을 겪었지요. 당시는 사법시험이 겨울에 있었는데 4학년 말에 마음먹고 본 시험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미 4학년 때 고도근시로 징집면제가 됐기 때문에, 굳이 굳 입대를 미룰 목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필요는 없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당시 법대에선 송상현 선생님이 가장 젊고 활발한 분이어서 대학원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따랐죠. 그런데 그분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잘 잘 보셔서 학자가 되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송상현 선생님께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과목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논문 제목으로 집단소송(Class Action)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1978년도 여름에 한창 더웠을 때 하루하루를 논문작성으로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엔 컴퓨터가 있기 전이어서 먼저 노트에다가 초고를 적고 그것을 원고지에다 옮겨 쓰는 식으로 작업을 했었죠. 당시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국내 자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일본에서는 그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었어요. 일본에 신도우코지(新堂幸司)라는 동경대학 민사소송법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쓴 글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서 편지를 써 국제우편으로 좀 보내주십사 부탁했더니, 조교를 통해서 진짜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읽었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 생각하면 당돌함에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집단소송의 모국이 미국이다보니 당연히 미국 논문들을 많이 참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1976년에 Harvard Law Review에서 집단소송을 특집으로 다룬 일이 있는데 백 페이지도 넘는 그 논문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두세 번씩 읽어도 알 듯 모를 듯해서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킁킁대며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기하게도 재미를 느꼈습니다. 주제가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남들이 모르는 좀 첨단적인 것을 연구한다.’는 자부심에 차 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 말고도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는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주로 선배들이었습니다. 만나면 각자 자신이 쓰는 논문이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은근히 과시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버드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에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가졌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논문을 쓸 때 그런 지적인 자부심 같은 것은 거의 느끼지 못하게 돼 버린 것 같아요.

유학할 때 미국을 택한 것은 제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원에는 최병조 교수님도 같이 계셨는데, 그때도 이미 독일어를 굉장히 잘하셔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정희철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최병조 교수님이 독일어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을 듣고서 “자네는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독일어를 배운다든가 독일로 유학을 간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한국의 법학에 대해서 무언가 약간 실망감이랄까 불만이 있었는데, 그것이 독일법의 영향을 받은 탓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독일에 가서 보니까 독일 법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답답한 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당시에 형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서울대 교수를 하고 계셨는데 그 영향도 컸던 것

같습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하실 때 하버드 로스쿨에 오셨던 분들이 여러분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워낙 한국 사람 수가 적다 보니 서로 다 알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무 변호사님, 이태희 변호사님, 법대 백충현 선생님을 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께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미국 유학에 대한 동경을 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문희 : 선생님께서는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주제로 석사논문을 쓰시고 이후 연구는 주로 회사법, 증권법 쪽 글을 많이 쓰셨는데요. 미국 유학 시절에는 주로 어느 분야를 연구하셨나요? 미국에서 공부하신 시간이 나중에 선생님의 진로와 학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합니다.

김건식 : 이것도 말씀 드리자면 한이 없는데요. 미국에는 두 차례 가게 되었습니다. 79년도에 처음 하버드에 가서 LL.M.을 마치고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국비장학금을 받아서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J.D.를 하게 됐죠. 하버드 유학은 형님 친구 분인 아시아시멘트 이윤무 회장께서 학비를 대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별로 기회가 없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버드에서는 회사법으로 논문을 쓰게 됐는데, 로버트 클라크(Robert C. Clark) 교수는 당시 30대 중반 정도였는데, 그분께 회사법을 들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최고 권위자인 필립 아리다(Phillip E. Areeda) 교수께 Antitrust Law를 듣고, 스티븐 샤벨(Steven Shavell) 교수한테 Law & Economics, 나중에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된 더글라스 긴즈버그(Douglas H. Ginsburg) 교수로부터 경제규제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법을 빼놓고는 어느 것도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과목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클라크 교수에게 논문지도를 부탁드리고 적당한 주제의 추천을 부탁드렸더니 그분이 금방 나온 재판관련 속보를 하나 던져줬습니다. 당시 연방법원과 델라웨어 주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던 분쟁에 관한 걸로 기억되는데 분쟁이 일단락된 것은 1981년의 일(Zapata Corp. v. Maldonado, 430 A.2d. 779 (Del. 1981))이니 1979년 당시에는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문건의 내용은 Special Litigation Committee, 즉 특별소송위원회에서 대표소송에 대해서 청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면 법원이 그 결정을 경영판단으로 보아 그것을 존중해서 대표소송을

각하하는 최신 동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따끈따끈한 판례속보가 대학교수 연구실에 전달된다는 사실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대표소송이라고 하는 건 집단소송하고 유사한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 미국의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를 보면 제 기억에 23조가 아마 집단소송이고, 23.1조가 대표소송으로 되어있어서 집단소송에 관한 석사논문을 쓸 때 한번 스쳐보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알팍한 속셈도 작용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정말 우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집단소송을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대표소송을 쓰기 쉽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당연히 없었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석사논문은 제가 회사법으로 전공을 정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당시에 특별소송위원회는 미처 관련 논문이 나오기 전으로 그야말로 최신의 주제였습니다.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습시다만 그 당시 제게는 이것이 대표소송을 피하기 위한 회사의 꿈수로만 여겨졌습니다. 우리 상법상 원고주주가 감사의 부제소결정에 전혀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도 작용했겠지요. 그래서 미국의 최신 실무를 정면으로 비판한다는 치기가 다시 발동해서 이런저런 논거를 짜내느라 고심했습니다. 그에 관한 논문은 다음 해부터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내 주장을 뒷받침할 논거를 사방으로 찾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논문초고를 클라크 교수에게 제출하고 코멘트를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연구실로 찾아갔더니 클라크 교수 만면에 미소가 가득한 채 두툼한 원고의 무게를 손으로 다는 듯한 시늉을 하며 “pretty good”이란 말을 해줬습니다. 사람이 좋아 걸으로 표시는 안하지만 늘 면담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던 그분이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논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거나 개선방향을 제시해주거나 하는 ‘지도’는 일체 없었습니다. 그저 미국에서는 논문을 발표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초고상태의 논문을 여기저기 보냈죠. 여기저기서 딱지도 맞았습시다만, 『The Journal of Corporation Law』에서 받아주겠다는 편지를 받고서 몸이 붕 뜨는 느낌으로 황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로리뷰에 논문을 발표도 하게 되었으니 학계로 가야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을 그때 조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학비가 떨어져 귀국을 해야 했는데 80년 말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도 배우고 돈도 모을 겸 해서 김&장 법률사무소에 잠시 근무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형님이 김영무 변호사님하고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거기서는 각종 법률문서, 계약서, 의견서

등의 국·영문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국내외 소송과 관련해서 통역을 했던 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번역은 좀 따분하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글을 쓰고 하는 데에는 좋은 경험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미국생활에서 받은 영향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지요. 제가 미국에 간 것이 만 24살 때로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사회경험이 전혀 없는 순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창피하지만 미국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당시 한국하고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천양지차(天壤之差)였지요. 그러니까 1979년은 박정희 시대 말기로 온 나라가 암울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자본주의 침단을 달리는 나라의 최고 로스쿨로 갔으니 제가 받은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상황에 대해서 열등감이 컸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좋게만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에서는 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자유주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천이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정부가 후견적으로 간섭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는데, 그쪽에서는 정부 권력에 대한 불신이 지나치게 느껴질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고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한 자존감도 약했기 때문에 미국물이 아주 많이 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 1년 반밖에 살지 않았는데, 귀국 직후 길을 가다가 사람을 툭 치고 지나가면서 불쑥 “Excuse me.”라는 말이 나왔던 적도 있었고요. (웃음) 또 친구들과 하고 이야기할 때도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더라.”라는 말을 많이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웃음) 얼마나 재수 없게 느꼈을지 언제 생각해도 낫이 뜨거워집니다.

학문적으로는 미국의 실용주의 학풍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법학계에서는 역사적인, 비교법적인 고찰을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논문을 쓰면 로마법, 독일법, 역사적 발전 등에 대해서 외국 문헌에 근거하여 치밀하게 서술하는 그런 식의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 미국에서의 학술 논문은 특히 회사법 분야의 경우 기능적인 분석이 많았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는 법경제학의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시카고대학의 리차드 포즈너(Richard Posner) 교수가 한창 명성을 높여가던 시절이었는데 하버드에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연을 마친 후 어떤 교수가 “당신은 너무 이론적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맞다. 난 이론적이다.”라고 바로 응수하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또 한 가지 영향은 인접학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70년대 정도 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학제적인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란 말이 많이 유행했는데, 제가 보기에 법학에서 학제적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법학 내부에서의 인접 분야와의 관련, 즉 상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법, 도산법, 소송법 등과의 관련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학 외부의 연관 분야와 관련해서는 회계나 경제학에서의 산업구조론이나, 경영학에서의 재무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유학했던 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소위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이 기세를 올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버드는 비판법학의 ‘소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당시 비판법학의 대표 격인 던컨 케네디(Duncan Kennedy) 교수의 ‘불법행위법’ 강의를 청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민주화가 되지 않았던 시절의 한국인에게는 매우 와 닿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귀국해서 비판법학에 관한 논문을 번역해서 『현상과 인식』이라는 잡지에 게재하고 법학개론 시간에 소개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경제학이나 비판법학은 굉장히 유익한 시야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극단에 흐르게 되면 너무 사물을 단순화하기 때문에 복잡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시각이 자칫 비상식적인 결과로 이끌 위험이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렇게 크게 끌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내게는 일찍부터 점진주의적, 실용주의적 성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화가 있습니다. 1980년대는 회사법 쪽에서 법경제학이 혜계 모니를 잡아가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좀 극단적인 또는 순수한 법경제학자들은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회사법학자이자, 계약법학자인 멜빈 아이젠버그(Melvin Eisenberg) 교수가 다소 전통적인 입장에서 회사법상 강행규정을 정당화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인 1988년에 아이젠버그 교수가 『The Nature of the Common Law』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은 판사가 재량을 가지고 마음대로 판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사회적인 여러 요인들이 있어서 그에 따른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요인들 가운데서도 판결에 대한 학계의 평가 같은 것도 중요해서, 그런 것을 의식하다 보면 판사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지요. 나는 아이젠버그 교수의 유명한 『The Structure of the Corporation: A Legal Analysis』라는 책을 번역한 일도 있어서, 1982년 그분을 뵈러 버클리대학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2001년에 콜럼비아대학에서 Visiting Scholar로 연구할 때, 마침 그분이 그곳에서 회사법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강을 해도 되겠냐고

인사를 했더니, 반가워하면서 꽤컬티 클럽에서 점심을 사줬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은 『The Nature of the Common Law』라는 책에서 보면 비판법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더니 그분은 정색을 하며 자신은 평생 어떤 견해를 비판하기 위해서 글을 쓴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판법학자들은 판사가 기득권층을 대변해서 거의 마음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니 결국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판결을 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당신은 정면으로 비판법학을 거론하진 않지만, 판결 그 자체가 사회적인 여러 여건의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니, 이것은 법학, 판결의 독립성, 자족성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셈으로 간접적으로 비판법학 주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이 법경제학 쪽의 극단적인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나, 비판법학 쪽의 극단적인 주장에 반대하는 것 모두, 상식에 따른 사고라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내 생각을 설명했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잠시 내 눈을 뻗히 쳐다보더니 꺾꺾 웃으며 “당신은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하더군요. (모두 웃음)

천경훈 :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첫 번째 유학 가셨을 때 이야기를 주로 해주셨는데요. 그럼 두 번째 유학 가셨을 때는 어떠셨는지요? 첫 번째와 어떻게 다르셨는지, 느낀 것이나 경험하신 것을 듣고 싶습니다.

김건식 : 두 번째 유학을 갈 때에는 국비장학금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국가 도움을 받아 공부를 했는데 뭔가 국가에 도움 되는 일을 했나 하는 반성을 이따금 하곤 합니다. 왜 Ph.D.가 아닌 J.D.를 했느냐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받았습시다. 저는 그때 순진하게도 미국법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J.D.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웃음) 그냥 젊은 치기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LSAT 성적이 잘 나와서 솔직히 하버드나 예일 같은 명문대에 가고 싶었지만 그런 곳을 갈 수 있는 성적은 아니었지요. 몇몇 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았는데,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대학이 아시아법, 특히 일본법을 제일 활발하게 하는 곳이었습시다. 저는 오래전부터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법에 대해 공부하면 좋겠다 싶어서 시애틀로 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워싱턴대학은 주립대학으로 나쁜 대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엘리트 스쿨은 아니다 보니 학생들도 다르고 교수들도 다르고, 지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은 하버

드랑 비교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지만 교수들 관심은 더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일본법 전문가인 헨더슨(Dan Fenno Henderson) 교수와 헤일리(John O. Haley) 교수로부터는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회사법과 세법 전공의 커머트(Richard Kummert) 교수는 business planning이란 매우 실무적인 과목도 가르쳤는데 강의가 치밀하면서도 군더더기 없어서 나도 언젠가 저런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천경훈 :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있고, 선생님께는 아마 추천서도 받으러 올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유학하실 때와는 환경이나 여건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요새 떠나는 학생들에게는 당부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건식 : 환경은 엄청나게 좋아졌지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됐고 그래서 법치주의도 확산됐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해서 두 나라 사이에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법학 분야에서는 아직 격차가 남아 있지만 전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갔을 때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회사법 수업을 듣는데 ‘tender offer’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데 ‘tender’라는 말도 알고 ‘offer’라는 말도 알아서, (모두 웃음) 무언가 좀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했죠. 그것이 ‘공개매수’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한국에선 공개매수라는 개념은 거의 가르치거나 논문에서 다룬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공개매수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지요. 비슷한 예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사람들은 내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은 크게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당시 회사법은 랑델 노스라는 큰 강의실에서 100명이 넘는 학생들과 같이 들었습니다. 클라크 교수는 매우 명쾌하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말 자체가 영어로는 ‘mumble’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웅얼웅얼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의 말씀은 그나마 좀 알아듣겠는데, 학생들과 하고 하는 질의응답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듣기가 무척 어려웠고, 몇 번 질의응답이 왔다 갔다 하면 전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아, 내가 이 중에서는 제일 바보가

아닌가.’하는 (모두 웃음) 참담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TOEFL은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대학에서도 수업이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법학지식 면에서 준비도 많이 되어 있고, 또 영어실력도 예전에 내가 갔을 때보다는 훨씬 좋아져서 어려움을 좀 덜 겪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이제 나라의 위상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위축되는 면도 덜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오히려 지금은 가면 미국의 단점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예를 들면 좀 청결하지 못하고 냄새가 난다든지 허술한 구석들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이른바 토종 한국인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해 미국 로스쿨에서 정식으로 교수가 되는 예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법대 졸업생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몇 있지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최근에는 추천서 쓰는 횟수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만, 지금은 특별히 당부하는 것은 없고, 그저 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강연도 많이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많이 가서 들으라.”거나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주위에 가볼 만한 곳이 있으면 구경도 많이 하고 경험도 쌓고 돌아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신 : 교수님께서서는 워낙 영어를 잘하셔서,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저희들과의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아 안도감이 듭니다. (모두 웃음)

김건식 : 참담하단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웃음)

최문희 : 아까 클라크 교수님이 선생님 석사논문을 코멘트하면서 논문을 출간하라고 그러셨다는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 권유를 아무한테나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국에서 온 25세된 학생에게 출간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 같습니다.

김건식 : 솔직히 말하면 논문이 출간할 만하니까 적극 권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그분 이야기는 미국에서는 평가를 받는 데 출간하는 것이 좋으니까 내봐도 좋겠다는 정도였지요.

최문희 : 그래도 논문 수준이 떨어지면 빈말로도 그런 말 안 할 것 같은데요.

김건식 : 나중에 클라크 교수가 1996년에 송상현 교수님께서 학장 하실 때 한 번 법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의 강연을 내가 통역했기 때문에 만난 자리에서 옛날 이야기를 했더니, 나라는 존재는 어렵듯이 기억하면서도 그 밖의 일은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모두 웃음) 내가 서울대 교수가 된 것이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상법학 연구〉

송옥렬 : 선생님께서는 1986년에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측면에서 당시 상황이랄까요. 당시 상법학계의 상황 등은 어떠했는지요? 선생님께서 당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건식 : 나는 정희철 교수님 후임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당시는 정희철 교수님 같은 1세대 상법학자들은 퇴임하시고, 2세대 분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법분야의 최기원, 양승규, 송상현 교수님들은 모두 대학시절 스승이시고 연배도 크게 차이 나서 나는 한참을 조교 비슷한 기분으로 지냈습니다.

당시에는 연구도 아직 사법시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로 교과서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교과서가 본격적으로 두꺼워지던 시절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내가 공부할 때는 골격만을 설명한 얇은 교재가 대부분이었는데, 차츰 외국, 특히 독일의 학설들을 많이 도입해서, 양적으로 굉장히 팽창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중요한 것은 우리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서 법을 정비하고 해석하는 일인데, 그런 의식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하자면 문제를 중심으로 법을 연구하기보다는 기존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풍조가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당시는 졸업 정원제로 인해서 법대 정원이 대폭 늘었던 시기라, 석사학위만 있으면 서울 시내에서도 교수가 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비하면 젊은 교수들이 굉장히 많았죠. 내 73학번 법대동기인 권기범 교수만 하더라도 이미 시립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고, 지금과 달리 30대 교수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윤영신 : 교수님께서 증권법은 서울대에서 처음으로 가르치신 거였죠?

김건식 : 네, 그렇죠. 1987년 1학기에 대학원에서 처음 개설했으니 33년 전의 일이네요.

윤영신 : 선생님께서 연구를 계속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신 주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러한 관심 분야도 시간이 가면서 많이 변화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특히 IMF 금융위기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건식 :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약간 뒤로 돌아가게 되는데, 내가 워싱턴대학에서 J.D.를 마친 것이 1985년입니다. 당시에 서울대 공채가 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장학금 기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 워싱턴 대학에는 Ph.D.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986년 3월에는 거기서 한국법을 강의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첫 강의를 미국에서 영어 강의로 시작한 셈입니다. 바로 얼마 안돼서 서울대 취직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7월 말까지 Course Work (대학원 수업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논문 제목은 『Corporate Governance』로 정하고 들어왔습니다.

주제를 이렇게 정한 것은 1986년에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라는 짧은 논문을 미국에서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논문은 1985년 3학년 때 있었던 비교법세미나에서 발표한 페이퍼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회사법이 우리의 문제해결에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논문을 어느 한 선생님께 보내드렸었는데, 그분께서 “이거 다 아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 알지만 말하지 않는 이야기였거든요. 그 논문은 너무 간략한 것이었기 때문에 귀국해서 발전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1986년부터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머릿속에는 그 논문을 빨리 마치고 새로운 것을 연구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논문을 제출해서 학위를 받은 것은 1995년이니까, 거의 10년 정도를 끈 셈이에요. 오래 걸린 평계를 대자면 한이 없지만 무엇보다 내 게으름을 탓해야겠지요. 다만 그 기간 동안 Corporate Governance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시간을 뺏는 일이 많았는데, 특히 강의준비에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원 강의 외에 학부에서 법학개론, 상법총론, 어음·수표, 회사법 특강 등을 가르쳤는데, 모두 학부시절에 충분히 강의를 듣지 못한 과목들이어서, (모두 웃음) 자습을 해서 가르쳐야 했습니다. 강의 첫해에는 학생들보다 한 일주일 정도 앞서는 정도만으로 아는 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개설한 증권거래법 관련해서는 연구를 더 해서 논문을 몇 편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Corporate Governance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내야 했습니다.

논문을 늦게 내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Corporate Governance란 것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또 계속 바뀌는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논문에도 ‘moving target’이란 표현을 썼는데, 계속 바뀌는 테마라 연구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식의 표현을 변명 삼아 썼던 것이죠. 그래도 외환위기 전에 마쳐서 다행이지, 외환위기 후였다면 영영 마치지 못했을 것 아닌가란 생각도 듭니다. 결국 논문의 결론 내지 주된 논지는 Corporate Governance의 개선에도 회사법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도 크게 일어나기 전이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빠른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던 때였습니다. Corporate Governance 관련해서 과연 법이란 것이 역할이 있는 것인가, 영어로는 “Does law matter?”라는 물음이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도급 법학자들은 법의 역할이 별로 없다는 주장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좀 자기 자랑을 섞어 말한다면 내 논문은 국제 학계에서 그런 논의가 성행하기 전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나는 법의 역할을 부정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극단론’이란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자료수집의 어려움인데 당시만 해도 소위 ‘Controlling Shareholder’에 관한 논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내외 학계의 관심이 별로 그쪽에 있지 않았고, 주로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대개 management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고, 법도 management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어서, Controlling Shareholder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능성을 살펴본 기억이 납니다. 그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영국법상의 ‘Oppression Remedy’라고도 하고, ‘Unfair Prejudice Remedy’라고도 하는 제도인데, 말하자면 소수주주 억압에 대한 구제수단이지요. 그런데 당시에 브리티시 콜롬비아대학 교수였고, 지금은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브라이언 체핀스(Brian R. Cheffins)라고 하는 교수가 ‘Unfair Prejudice Remedy’에 대해서 쓴 논문이 있어서 그것을 읽고 혹시

지배주주의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Unfair Prejudice Remedy’라는 것은 주로 폐쇄회사에서 이용되는 것이거든요. 워낙 참고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으니, 그런 것까지 들춰본 것이지요. 그런데 논문을 겨우 마친 후에는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Controlling Shareholder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의 ‘대리문제’란 것이 주식 소유가 분산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에서는 내용이 상당히 다르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들도 다르다는 식의 논의가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보면서 한편으로 좀 부러웠습니다. 내가 연구할 때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더니, 지금은 이 주제에 대해서 주식소유 분산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 특유한 현상이고, 일반적으로는 지배주주의 행동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더 문제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 걸 보면 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노혁준 : 선생님의 여러 토픽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것이고, 1986년에 부임하신 이후 IMF 구제금융 시기까지 거치시면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제도의 산 증인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우리 법제에서 특히 개선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건식 : 이것은 아주 일반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해서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법률적인 면에서 변화도 있었지만, 법률 외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느 나라도 기업지배구조가 완벽하지 않고 나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배구조라는 것은 사회 전반의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계, 특히 회사법 학계에서 감당할 몫이라는 것은 반드시 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연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법을 연구하는 우리로서는, 기능주의적 사고를 좀 더 착실하게 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걸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신 : IMF 외환위기 직후의 우리나라 지배구조에 관해서는 법 개정도 숨가쁘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일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선생님의 연구와 관련하여 에피소드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외환위기가 아니었으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교수로서의 삶의 단계도 달라지셨을까요?

김건식 : 그럴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미안하지만 외환위기가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Corporate Governance에 대해 오래 연구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Corporate Governance라는 말도 잘 쓰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용어가 신문지상에까지 등장하게 되어 버렸잖아요. 지배구조 전문가로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속된 말로 하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일 저일에 관여하면서 여러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금방 생각이 나는 것은 당시 IMF, IBRD 쪽에서 우리나라 회계 자료는 못 믿겠다고 감사위원회 도입하라고 압력을 넣던 일입니다. 회계정보를 못 믿으니 M&A 할 때 합병이나 주식매수 대신 소위 Asset Deal로 했잖아요. 말하자면, 한국 기업의 회계정보는 전혀 믿을 수가 없고, 회계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감사위원회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나도 아는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도입을 하긴 해야 하는데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위원회라서 사외이사까지 도입해야 했습니다. 이걸 특별법으로 도입하긴 좀 어렵고 특별법에 규정을 두더라도 상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당시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도입을 위한 소위원회를 따로 만들었어요. 당시 상법개정위원회에는 마침 나도 제일 말석에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상법개정위원회 교수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말하자면 외부 압력으로 그런 이상한 것을 만드는데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식으로 다 피하니까 결국 나한테 떨어져서 내가 외부 교수 몇 분들을 모시고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IBRD 한국 담당자가 와서 여러 차례 만났고, 그 인연으로 나중에는 IBRD 컨설턴트로도 일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요구는 가능한 한 적용범위를 넓게 하라는 거였어요. 상장회사 전체를 적용대상으로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점진론자인 나는 그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하면서, 그러지 말고 소수로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쌓아서 조금씩 확대하자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총자산 2조원 이상 규모의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상장회사 전부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정도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근거만 마련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감사위원회 초안을 가지고 상법개정위원회에 갔더니 역시 학계위원들과 법원 대표로 나온 위원이 지금의 감사 제도가 무엇이 잘못이냐며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감사 제도는 대륙법계 상법에서의 자존심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표결을 했다면 당연히 부결이 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당시 IMF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야하는 정부로서는 이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나서서 우리도 불만이 있지만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하여 겨우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도도입에 관한 논의가 실제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어서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윤영신 : 제가 그때 선생님 소위원회 하실 때 리서치를 도와드렸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위원회가 무엇인지 잘 몰랐었다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법의 내용을 보면 감사를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서, 감사가 하던 모든 것을 감사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감사위원회가 미국과는 다르게 이상하게 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식 : 미국에서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실히 담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가 없어지면서 그런 사소한 역할로 축소되는 것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사권한을 전부 감사위원회에 넘기게 된 겁니다. 하지만 감사의 권한을 현실적으로 감사위원회가 모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안수현 : 실제로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코스닥 상장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를 둔 곳은 실제로는 감사의 기능은 거의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계감사는 그래도 외부감사인 이야기를 듣고서 좀 하는데, 업무감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슈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회계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주된 일이고, 업무감사는 그렇게 부담을 안 주니까 그것을 미국하고 비교하기는 쉽지 않고, 한국에 들어온 감사위원회 제도만이라도

정착시켜야 되는데, 코스닥 상장회사들을 보면 감사위원회가 잘 작동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김건식 : 그 회사들은 그게 강제가 아닌데도 임의로 두고 있다는 거죠?

안수현 : 네, 임의로 두고 있고요. 대부분 감사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이른바 권력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업무감사라는 건 그냥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김건식 : 감사위원회가 미국식으로라도 작동하려면 전제조건이 사외이사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부터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어렵지요. 그렇긴 한데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과거의 감사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늘 비유를 하는 것이, 국회의 기능이 형편없다고 해서 그걸 없애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사외이사도 그런 것이지요. 사외이사가 허수아비라는 비판이 많은데 상당 부분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없애면 대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나은 대안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한 번 만들어놓으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회에 대해 지금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70년 전 처음 출발할 때는 더 기가 막힌 부분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더 좋은 예는 대학일지도 몰라요. 1945년에 해방된 다음에 솔직히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춘 곳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저기 대학이란 간판 걸고 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져서 세계 몇 대 대학에도 이름을 올리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시작한 보잘것없더라도 길게 보고 조금씩 좋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도 긴 호흡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옥렬 : 외환위기 당시의 이야기는 늘 흥미롭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생님께서 예전에 비슷한 시기에 SK Telecom 사외감사를 하시다가 소송을 하신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잘 모르던 일인데요.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사연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건식 :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면 한이 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1998년 2월에 하버드에서 강의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SK Telecom이란 회사의 사외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SK Telecom은 SK그룹이 대주주지만 상당 부분을 KT와 타이거펀드라는 헤지펀드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 두 주주가 독립적인 인사의 이사회 참여를 강력히 주장해서 결국 사외이사 4명과 함께 내가 사외감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SK Telecom은 돈을 잘 버는 이른바 캐시 카우였는데 일반주주들은 회사 돈을 어려운 계열사로 빼돌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심을 뒷받침하는 일들도 없지 않아서 대주주 측과 사외이사들이 대립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릴 여유는 없지만, 하여간 1998년에는 사외이사들이 한 주에 3, 4차례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일이 비밀비재했습니다.

1999년 초에는 어느 정도 주주들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서 평온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회사가 대규모 신주발행을 강행하는 바람에 대주주와 사외이사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신주발행은 규모도 컸지만 직전의 투자설명회에서는 물론이고 사외이사들에게도 사전에 전혀 알리지 않아서 사외이사들이 격분하였습니다. 사외이사들은 회사 측에 일단 이사회에서 발행이유를 설명한 후에 발행여부와 시기를 정하자고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전혀 응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사외이사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결국 대주주 쪽에 압력을 가하는 방편으로 당시 대표이사인 손길승 회장의 해임을 구하는 임시주총소집을 사외감사인 내가 회사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주총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주총을 소집하되 그 일자를 신주발행이 끝난 후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법원에 주총소집일자를 당겨야 한다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임시주총소집을 요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이길 자신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대주주 측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였는데 우리는 당시 재벌에 다소 비판적인 DJ가 집권하고 있었고 외환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지도 않은 때였던지라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내심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의 기대는 순진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죠. 신문에서는 처음에는 다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듯하더니 나중에는 일방적으로 회사 편을 들었습니다. 사외이사들을 외국 투자자의 앞잡이쯤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측 준비서면을 보니 나마저도 외국투자자의 앞잡이로 의심 받을 소지가 있다는 식의 표현도 있더군요. 대리인이 전부터 잘 아는 로펌이고 그 표현을 쓴 변호사가 제자일 가능성도 있었

기에 내가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은 국내 언론이란 결국 광고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이 분쟁은 저를 비롯한 사외임원들의 완전한 패배로 끝났습니다만 그 후의 전개는 승패를 따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시 승리했던 대주주 측은 나중에 여러 문제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만약 이때부터라도 무리한 운영을 자제했다라면 그런 고초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한편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사외이사들 및 당시 타이거펀드 담당자와는 가까운 관계가 되었고 그 친분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문희 : 언론을 통해 어렵듯이 알던 SK Telecom 사건 전말을 듣고보니 흥미롭네요.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용기있는 행동을 해 주셔서 저희도 같이 뿌듯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같은 후학들에게 연구와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시다면 몇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건식 : 사실은 여러분 모두 제 제자인 셈이지만 이미 연구 면에서는 내가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대답을 젊은 연구자들도 혹시 본다면, 그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젊은 연구자들을 만나면 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요. 논문을 쓸 때 앞으로 단행본으로 만들 것을 염두에 두고 쓰라고 권고합니다. 저는 그걸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우연히 의뢰받은 것을 쓰거나 생각나는 것을 쓰거나 해서 그 논문들이 서로 간에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다시 연구자로 시작할 수 있다면 나중에 책을 낸다고 전제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가령 책이 8장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요번에 쓰는 건 3장, 그 다음엔 5장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고, 나중에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논문으로 되어 있으면 찾아서 읽기가 힘든데 책으로 만들면 찾아서 읽기가 쉬워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깊이도 더 생길 수 있고 좋은 것이 아닌가 해서 젊은 학자들 만나면 그런 식으로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에서 의뢰를 받을 때에도 협상하기 따라서는 원하는 방향의 테마를 고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외 교류〉

천경훈 : 다음으로는 해외 교류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싶은데요. 선생님께서는 다른 교수님들보다는 특히 해외 교류를 열심히 하셨고, 많은 성과도 거두신 것 같습니다. 처음 해외학자들과의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신 것은 언제부터였는지요?

김건식 : 솔직히 처음에는 해외 교류보다는 해외학자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배우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무래도 수준차가 있고, 또 외국 쪽에서 우리나라 법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쌍방적 교류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죠. 일본학자들 하기도 일찍부터 만났지만, 학문적으로 주고받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은 주로 자기 나라 사정이나 일부 선진국 사정에 관한 것인데, 그 면에서는 내가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것을 제공할 수도 없었지요. 우리 법에 대해서는 내가 물론 비교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법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학문적 교류를 기대할 수가 없었는데, 차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한국의 위상도 올라가고 특히 Corporate Governance의 경우에는 비교법적인 관심이 늘게 되니까 조금은 교류의 여지가 생겨났습니다.

노혁준 : 해외 교류를 위한 지원이 거의 없던 시절에 선생님께서 거의 혼자 애쓰신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도 해외 교류에는 소극적이었던 것 같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도 한국, 서울대의 존재가 크지 않았던 때에 해외 교류를 시작하셨는데요. 힘든 사정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김건식 :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교류에서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것은 언어, 즉 영어지요. 영어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교류가 가능한데 그런 영어 실력을 갖췄는지가 제일 먼저 문제되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영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콘텐츠를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이 어떤 것에 관심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려면 그 사람들의 논의 상황을 통해서 관심사항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쪽 사정을 모르고서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을지를

대강 파악하고서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가지, 즉 상대방이 관심 있는 내용, 또 그것을 어떻게 재밌게 풀어내느냐 하는 것이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젊어서는 사실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전혀 몰랐습니다. 특히 내가 무엇인가 발표를 하면 청중이 모두 다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요. (모두 웃음) 그런데 지금은, 청중은 아무 관심이 없을 것으로 전제하고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학자, 특히 일류학자들은 상대방에게 배울 것이 없는 관계는 원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해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한 그 사람하고의 대화는 빨리 끝내려고 하지요. 나중에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고 하다보면 우정도 생기고 학문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배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안수현 : 해외학자들 중 인상적인 분들, 배울 점이라든가 혹은 에피소드 같은 것이 있으실까요?

김건식 : 사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운이 좋아서, 유명한 학자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의 회사법이나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중견 이상의 학자들은 대개 만나봤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배우고 자극을 받았고, 또 그들 중 일부와는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에피소드는 많지만 두 가지가 생각나네요. 하나는 1990년 뮌헨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독일어로는 *Betreuer*라고 하는데 일종의 지도교수를 맡아주셨던 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홉트(Klaus J. Hopt) 교수입니다. 뮌헨은 워낙에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집 구하고 이사하는 문제로 1년 내내 고생을 했습니다. 홉트 교수님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집 구하는 일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신문 보고 전화해보는 식으로 접근했는데, 그분이 저를 딱하게 보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집을 구하는 일도 변호사가 하듯이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야지. 당신같이 체계 없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웃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조금 서운하기도 했죠.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면에서 당시에 내가 너무 의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홉트 교수님 말씀이 다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성을 했죠.

다음으로 생각나는 분은 일본의 유명한 동경대 회사법 교수인 에가시라 겐지로(江頭憲治郎) 교수입니다. 그분하고도 친해져서 일본에 가면 요즘도 식사 대접을 받곤 합니다만, 그분한테는 본받을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주말에도 학교를 나가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젊었을 때 집에 책상이 없어서 학교에 가서 연구를 해야만 했는데 그게 습관이 되어 그런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는 ‘에가시라 교수 같은 정말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학자도 집에 책상도 없어서 학교에 와서 연구를 한다는데, 나는 정말 얼마나 혜택받은 사람인가. 내가 무슨 불평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주위 여건이 뭔가 좀 불만스럽다고 느끼는 순간이면 에가시라 교수를 떠올리며 참게 되었습니다. (모두 웃음) 또 하나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생각나네요. 아마 세법 교수인 나카자토 미노루(中里實) 교수 이야기일 거예요. 그분은 젊었을 때 집에 잠 잘 공간이 없어서 식탁 밑에서 잤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기로는 식탁 밑으로 발을 뺀고 잤다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는 집이 좁아도 적어도 그렇게까지 하며 살지는 않잖아요. ‘나카자토 같은 뛰어난 학자도 그런 생활을 견디고 있는데 내가 무슨 불평을 할 수가 있느냐.’ 항상 일본에 다녀올 때면 좀 겸허하게 살아야겠다 반성을 하곤 합니다.

윤영신 : 선생님께서는 외국에서 강의도 많이 하셨는데요. 재밌었던 일이나 인상 깊었던 일이 있으셨는지요? 우리나라와 비교해 봐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김건식 : 1986년 3월 첫 강의를 시작으로, 올해 1월 싱가포르국립대학 강의까지 하면 대략 6~7번 했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의 강의는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특별히 제가 강의 경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일 뿐이지 내용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와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수강생에게 도움 되는 내용의 강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무언가 자극이나 시사를 줄 수 있으면 좋겠죠. 최근에는 중국법, 일본법도 결들인 강의도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한국법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죠.

〈교육〉

최문희 : 선생님께서는 서울대에서 33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 로스쿨 체제에서는 변호사시험에 치중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교육철학을 겸비하는 것이 마치고 도달할 수 없는 이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선생님의 교육철학을 듣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김건식 : 글썄요. 교육철학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해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네요. 내가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것 같은데, 처음 교수생활을 시작할 때는 교과서에 없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교과서에 안 나오는 것을 조사해서 보충해주는 식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갈수록 책이 워낙 두꺼워지고 내용이 많아져 오히려 중요한 것을 알기 쉽게 가르쳐서 확실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것에 중점을 두었죠. 그런데 더 욕심을 부리자면, 학생들이 뭔가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을 해서 좀 더 수준 높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잘 배워서, 배우지 않은 다른 문제에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게 해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문제만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연마한 능력을 갖고 새로운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욕심의 영역에 속하는데, 실제로 그것까지는 달성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다음으로는 특히 최근에 와서 부쩍 느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강의실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인데, 나는 그것이 바로 ‘공동작업을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결국은 공동으로 하거나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습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남들하고 일을 같이하거나 남이 도와주고 싶게 만드는 능력은 크게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칫 시쳇말로 ‘꼰대’스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송옥렬 : 아마 선생님께서 처음 교수가 되셨을 때와 지금은 상황도 많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를 거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요즘 학생들이라든지, 교육환경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건식 : 내 인상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인 1980년대 후반에는 내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내가 가장 젊은 교수였던 터라 학생들이 동질감을 느끼면서 좋게 봐주었던 것 같습니다. 법학개론을 많이 가르쳤는데 어설픈 짜이 없는 강의였습니다만, 학생들이 굉장히 집중을 하고 신기해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그런 식의 경험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생각해 보면, 아마도 법학개론보다 상법은 아무래도 좀 더 기술적이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가 어려워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솔직히 10, 20년 지나면서 아는 것은 점점 더 많아졌지만, 어쩌면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 가르치는 열정이 줄어들어서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열정이 있었고 학생들이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지금은 그런 열정이 아무래도 식다보니까 학생들도 그것을 눈치채고 따분하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역시 정년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모두 웃음) 반면에 학생들 쪽을 보면 특히 학부 학생들은 순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로스쿨이 되었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학생들은 더 똑똑하죠. 나쁘게 말하면 영악하게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해도 되나요? (모두 웃음)

안수현 :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제일 열심히 가르쳤을 때 평가점수는 더 나쁜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피곤해 해서요. (모두 웃음) 상법, 특히 회사법은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학부 학생이든 로스쿨생이든 사실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특히 신경 쓰신 부분이나 노하우를 가르쳐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건식 : 노하우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되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이는 법학의 성격이 실용학문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평생 실무경험 없이 학교

에만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자격지심이 작용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계속 학교에 있다 보면 공허한 이론에 빠지기 쉬울 것 같아서, 내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실무 쪽을 의식해서 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 좋지만 몰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론만 공부했는데 그 이론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고, 오히려 해롭기까지 하죠. 그런데 실용적인 지식은 독창적인 것도 아니고 대단할 것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쓸모가 있거든요. 아주 뛰어난 학생이 되진 못하더라도 쓸모 있는 지식을 갖추어서 밖으로 나가면 사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강의내용도 좀 변화가 되었는데, 초창기에는 회사법 강의할 때 채권자 보호, 회사의 총칙, 회사의 설립 등과 같은 부분에 시간을 많이 들였지만, 점점 그 부분을 좀 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과거에는 그 부분 강의를 한 달가량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1주 반 정도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노혁준 : 교육 관련해서는 로스쿨 이야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더구나 선생님께서는 서울대 로스쿨 초대학장으로 지금의 로스쿨을 설계하시다시피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특히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데 듣고 싶습니다.

김건식 :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억을 하실 텐데, 당시 갑자기 로스쿨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서울대의 경우에도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 인력 면에서의 대비는 물론이고, 물적 요건을 갖추었어야 했는데 모든 것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죠. 거기다가 예산도 없어서 모금부터 해서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이걸 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서울대에 대한 외부의 시기를 실감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대에 거는 기대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큰 책임감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교육 내용도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설계를 했어야 했죠. 이 작업을 할 때는 여기 계신 송교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힘을 많이 덜 수 있었습니다. 각 과목별로 가르치는 내용이나 방법이 과거와는 좀 달라야 할 텐데 그것을 교수

들한테 인식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그 중요성에 대해 역설해도 뭔가 좀 벽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공동저자들이 다 계시지만, 회사법도 새로운 형태의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공동 작업을 했던 일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강의를 통해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일부에 집중해서 깊이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를 깊이 가르치면 나머지는 자습을 통해 익힐 수 있겠다고 낙관적인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변호사시험이 예상보다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 이제는 정보전달도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점점 옛날 강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천경훈 :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만, 로스쿨 도입 후 이제 10년이 지나갔는데요. 처음 제도를 설계하시고 출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선생님으로서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상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건식 : 로스쿨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제자들을 가끔 만나는데, 만나면 참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정보 전달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교육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의가 변호사시험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는 않죠. 서울대만을 두고 보자면, 교육만이 아니라 연구 면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법학연구 수준도 좀 높여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세상이 점점 국제화 되고 있어서 법학연구도 국제 수준에 어느 정도 맞추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연구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점에서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 다행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남아 있는 분들께서 나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니까 이런 문제들은 잘 대처해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BFL 등 실무와의 교류〉

윤영신 : 오늘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제가 선생님 뵈었을 때도 느꼈었던 것이,

선생님께서서는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좀 더 실용적인 것을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BFL(Business Finance Law)』 창간작업이 선생님께서 하신 활동 중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잡지이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유형의 잡지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 시작하시게 된 것이지요?

김건식 : 내가 실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무를 많이 알고 있어서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역설한 것입니다. 『BFL』 같은 잡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일본의 『상사법무(商事法務)』와 같은 잡지를 보면, 그것이 무슨 심오한 학술논문을 실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구독하면서 우리도 이런 잡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었습니다. 일본학자들을 만날 때마다 느낀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25세부터 학계에 몸담고 있는 그야말로 순수한 학자들인데도 실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했던 말이에요. 그것이 항상 부러워서 우리도 『상사법무』 같은 잡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그것을 제가 시작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좀 있으면 그런 것이 나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1990년대 중반에 송상현 선생님이 학장 하실 때 우리도 이런 수준 높은 잡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젊은 교수들 사이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교수들이 원했던 것은 수준 높은 학술지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소위 peer review는 고사하고 원고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원고의 수준과 무관하게 무조건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엄격한 심사를 통해 믿을 만한 좋은 논문만을 선별해서 실을 잡지의 필요는 당연히 있었고, 같이 있었던 대부분의 교수들이 그 필요에 동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실무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는 잡지를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두 가지 다 실현되지 못한 채로 끝나게 됐었죠.

노혁준 : 『BFL』을 처음 창간했을 때는 사람들 사이에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던 것 같지만, 곧 100호가 나올 정도로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는데요.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있었다면 듣고 싶습니다.

김건식 : 처음 시작하려고 하니까 말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학계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실무자분들도 그렇고. 괜히 고생만 한다고 말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창간사가 다소 비장한 톤으로 되어있는 건 그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대개 다들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시작한 동기와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얼마 전부터 유튜브에서 강연이나 인터뷰를 즐겨봅니다. 그것을 통해 알게 된 분으로 에스라 보겔(Ezra Feivel Vogel)이라고, 하버드대학에서 일본학과 중국학을 연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한국에도 그분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현진, 송호근 이런 분들이 아마 다 제자일 거예요. 그분이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가 생각하는데, 자기 이야기인지 중국학을 하던 페어뱅크(John K. Fairbank) 교수 이야기를 전한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분이 하버드대 교수의 사명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버드대학은 훌륭한 도서관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튼튼하니까 그곳의 교수들은 무언가 사회를 위해서, 학계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어요. 나는 서울대 교수의 사명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가 국제적으로는 몰라도 국내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좋은 환경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보통 이런저런 일로 외부에 도움을 청하면 다들 도와주려고 합니다. 나도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이런 일 저런 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연구만해서 논문 내는 것이 좀 더 학자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교수로서 내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주도하면 성공확률이 더 높는데 그런 일은 외면하고, 자기 개인적인 연구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고민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공동작업이거든요. 그렇지만 다들 각자 엄청나게 바쁘고 힘들게 사는 것을 아는데 내가 뭘 또 시작하자는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하고 좋긴 한데, 서울대 교수의 지위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고민을 했습니다. 이젠 그런 고민에서도 해방돼서 홀가분합니다.

최문희 : 제가 선생님 통해서 알게 된 몇몇 동경대 교수들을 만나서 이런 저런 이

야기를 하던 중, 그 교수들이 한국에도 『상사법무』 같은 것이 있다고 물어보길래 우리도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회사가 아니라 서울대 금융법센터에서 김건식 선생님께서 만들어서 나온 것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워 하더라고요. 어떻게 출판 비용이며, 저자 섭외 등을 회사가 아닌 학교에서 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앞으로 『BFL』 창간자로도 왕성한 기여를 해 주실 거라 믿지만, 저희는 그래도 선생님께서 학교를 떠나신 후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BFL』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식 : 저는 현실주의자라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이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가’의 기준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BFL』이 지금 상태에서 하나도 변화되는 것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유지되기만 하더라도 저는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자면 이것을 시작한 것이 16년 전인데 그때는 여러 가지로 지금보다 여건이 더 좋지가 않았을 때인데도 어떻게든 발간했는데, 계속 현상유지에 그친다면 좀 아쉬움은 있죠. 솔직히 그때의 발간 부담에 비해서 지금은 부담이 덜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질적으로 더 좋게 만드는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양적인 확대도 필요한 것 아닌가 간혹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부담을 늘리는 일이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수현 : 『BFL』은 대학원 수업에서 더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 가셔도 『BFL』에 실린 타이틀을 이야기하면서 좀 참고하라 그러면 고마워하기도 하고, 이미 기관지로 구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렇게 『BFL』은 실무와의 교류를 위한 정말 좋은 방법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실무와의 교류가 정말 중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더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희 연구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건식 :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론으로는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습시다만, 법학이라는 것이 실용학문적 요소가 강하니까 실무와 괴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제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겠죠. 특히 학계에 오래 있다 보면, 자칫 실무를 소홀히 하고 자기만족에 빠져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실무가와 교류하고 다른 학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젊었을 때 민사판례연구회에 참여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실무가들이 판례를 읽고 해석하는 태도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무식하던 소릴 들을까 봐 토론에 끼지도 못하고 그저 듣기만 하는 게 좀 부끄럽게 생각될 수도 있었지만 꾸준히 참석하며 많이 배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자의 연구란 혼자 하는 작업이 많고, 그런 면에서는 고독한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크게 보면 학문 공동체라는 게 있어서 공동으로 해야 되는 일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외면하면 자칫 독단에 빠지기 쉽고, 반면에 너무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버리죠. 인생만사가 모두 그렇지만 이 일에서도 둘 사이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수현 : 이것과 관련해서 간혹 국회하고 세미나를 하거나 어떤 단체와 협업을 하게 되면 오해받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송사건을 학회에서 이슈로 다룬다고 하면 로펌과 같이 세미나를 하는 것도 가능한 교류가 될 수 있고, 국회와의 교류도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중요할 수 있는데, 한자리하려고 그러느냐는 등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건식 : 사실 어떤 단체하고 같이 활동을 할 때에는 그 단체가 원하는 쪽으로 결과물을 내는 데에 이용당할 가능성도 있지요. 그래서 학문의 중립성, 객관성하고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그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곳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현실과 괴리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조심하면서 교류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리 욕심 때문에 외부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 전에 학교 간행물 학생기자들과 한 퇴직 인터뷰가 생각나네요. 학교 외부에서도 오라는 유혹이 많으셨을 텐데 왜 30년 넘게 학계에만 계속 계셨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지난 30여 년 동안 한 번도 외부에서 무슨 자리를 해보라고 제의를 받은 적이 없어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모두 웃음) 그런데 나는 어찌다 보니 학계에서 일생을 보냈지만 교수가, 특히 법학교수가 공직을 맡아 일을 하는 것 자체를

꼭 나쁘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거기로 진로를 바꿔도 좋고, 아니면 거기에서 경험하고 학교로 돌아와도 좋고요. 교수의 다양성이란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송옥렬 : 마지막으로 추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김건식 : ‘떠날 때는 말없이’란 말을 실천하고 싶었는데 말문이 터지다 보니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네요. 나는 이상적인 상법학자가 되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뒤늦게나마 좀 보완해보려고 애를 써보기도 했지만 역부족인 상태에서 퇴직을 맞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뭔가 쓸모 있는 일을 해보려고 꿈틀거렸던 것이 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대답을 읽는 젊은 사람들도 너무 위만 쳐다보지 말고 각자 자기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며 삶의 보람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일생동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을 여기서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법대 여러분들께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시절 가르쳐주셨던 은사님들, 특히 상법분야의 정희철, 최기원, 양승규, 송상현 선생님께는 나이가 들수록 감사의 마음이 깊어지네요. 특히 생존해 계신 세 분께는 최근에 따로 찾아뵙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럴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법대에 같이 근무했던 선배, 동료, 후배 교수님들로부터도 이런 저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때론 학내 대소사에 대한 생각 차이로 대립하며 사이가 서먹해진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니다. 돌이켜보면 인간사에 대한 지혜와 관용이 부족한 자신을 탓해야할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모자란 사람을 늘 따뜻하게 대해준 법대 구성원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간혹 마주칠 기회가 있을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일동 :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건식(金建植) 교수 연보·논저 목록

I. 연 보

생년월일 : 1955년 1월 10일

부 : 김우봉(金又峰) 모 : 박순임(朴順任)

부 : 윤현숙(尹賢淑) 자 : 현구(炫九), 현진(炫鎭)

e-mail : konsikim@snu.ac.kr

[학력]

- 1973. 2. 경기고등학교 졸업
- 1977.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LL.B.)
- 1979.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LL.M.)
- 1980. 6. Harvard Law School 법학석사(LL.M.)
- 1985. 6.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법학박사(J.D.)
- 1995. 12.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법학박사(Ph.D.)

[수상]

- 2012. 4. 황조근정훈장
- 2015. 2. 무애학술상(무애학술연구재단)
- 2017. 2. 우수논문상(한중법학회)

[학내경력]

- 1986. 9.~1988. 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 1988. 10.~1993.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1993. 4.~1998.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1998. 4.~2020.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994. 6.~1995. 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부학장
- 2000. 1.~2002. 1. Journal of Korean Law 초대 편집위원장
- 2001. 12.~2003. 1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2002. 4.~2008. 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금융법센터장
- 2003. 9.~2020. 2. BFL 편집위원장
- 2008. 6.~2010. 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학장/원장

[학외경력: 국내]

- 1992. 1.~1996. 12. 법무부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 위원회 위원(집단소송법)
- 1996. 9.~2001. 2.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조사심의조정위원
- 1997. 4.~2008. 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업무자문위원
- 1997. 12.~1999. 12.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및 회사법개정위원회 위원
- 1998. 3.~2000. 3. SK텔레콤 주식회사 사외감사
- 1998. 9.~2004. 1. 재정경제부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 1998. 10.~현재 성보문화재단 이사
- 2001. 4.~2003. 3. 금융감독위원회 회계감리위원
- 2004. 3.~2009. 2. KT 사외이사
- 2004. 3.~2010. 3. LG화학 주식회사 사외이사
- 2008. 7.~2010. 6. 한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2010. 6.~2014. 12.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사외이사
- 2012. 12.~2014. 12. 안전행정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 2013. 3.~2014. 2.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 2013. 5.~2015. 5.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학외경력: 국외]

- 2002~2005 World Bank (East Asia & Pacific Regional Office), Short Term Consultant
- 2010~2014 일본 동경대학 법과대학원 자문위원회 위원
- 2014~2020 Global Corporate Governance Colloquia 이사
- 2017. 4.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Law Faculty, 자문위원 (International Advisory Panel)
- 2019~현재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 Research Member

[해외연구 및 국제 교류]

- 1986. 3.~1986. 6.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강사
- 1990. 7.~1991. 8. 독일 뮌헨대학교 객원연구원(독일 훔볼트재단 연구비 수령)
- 1995. 8.~1996. 2.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객원조교수
- 1997. 1.~1997. 2. 홍콩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객원교수
- 1998. 7.~1999. 7. Duke Law School (Hong Kong program), 교수
- 1998. 1.~1998. 2. Harvard Law School, 객원교수
- 2000. 7. Stanford Law School 객원연구원
- 2001. 9.~2001. 11. Columbia Law School 객원연구원
- 2011. 10.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객원연구원
- 2016. 1.~2016. 2.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Law Faculty, 객원연구교수
(2018. 1.~2018. 2.) (Visiting Research Professor)
- 2016. 8.~2016. 12.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객원교수(Global Professor)
- 2019. 1.~2019. 2.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Law Faculty, Lionel Sheridan Visiting Professor
- 2020. 1. 호주 Monash University Law Faculty, 객원연구원

II. 논저 목록

1. 단행본(단독 및 공동)

- 『프랑스상사회사법개설』, 법무부(1988.12) (공저자: 김은기, 윤영신).
- 『무의결권우선주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1994.11).
- *Chaebol and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워싱턴 주립대 박사학위 논문 (1995.12).
- 『미국증권법』, 홍문사(1996.1).
- 『스왑거래의 법적 연구』, 한국금융연구원(1996.12).
-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Corporations and Partnerships Monograph "South Korea"*, Kluwer Law International (공저자: Choong-Kee Lee).
- 『미국의 증권규제』, 홍문사(2001.7) (공저자: 송옥렬).
- 『기업회계기준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의견』, 한국회계연구원(2003.3) (공저자: 박정훈, 이창희).
- 『증권거래법』 제4판, 두성사(2006.6) (초판: 2000.9; 제2판: 2001.12; 제3판: 2004.5).
- 『21세기 회사법 개정의 논리』, 도서출판 소화(2007.3) (공저자: 송옥렬, 안수현, 윤영신, 정순섭, 최문희, 한기정).
- 『기업지배구조와 법』, 도서출판 소화(2010.3).
- 『회사법연구 I』, 도서출판 소화(2010.9) (2011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회사법 연구 II』, 도서출판 소화(2010.9) (2011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자본시장법』 제3판, 두성사(2013.10) (공저자: 정순섭) (초판: 2009.4; 제2판: 2010.9).
- 『주석상법(회사IV)』 제5판(정동윤 편), 한국사법행정학회(2014.12) (공저자: 송종준, 최완진) (제4판: 2003년; 제3판: 1999.2).
- 『회사법』 초판, 박영사(2015.1).
- 『신체계회사법』 제7판, 박영사(2018.2) (공저자: 노혁준, 박준, 송옥렬, 안수현, 윤영신, 최문희) (초판: 2010.3; 제2판: 2010.10; 제3판: 2012.2; 제4판: 2013.2; 제5판: 2014.2; 제6판: 2016.2).
- 『중국회사법』, 박영사(2018.2) (공저자: 김종길, 남옥매, 서의경, 양병찬, 오일환, 장진보, 정영진).
- 『회사법』 제4판, 박영사(2020.2) (공저자: 노혁준, 천경훈) (제3판: 2018.2; 제2판: 2016.3).
- *Corporations and Partnerships-South Korea* (third edition), Kluwer(2019.4) (공저자:

Kyung-Hoon Chun, Hyeok-Joon Rho, Ok-Rial Song) (1판: 2014.3; 2판 2015.10).

2. 편집

- 『상사판례연구 I, II, III』, 박영사(1996.11) (공편자: 최기원, 김성태, 목영준, 김용덕, 권순일).
- 『금융거래법강의』, 법문사(1999.3) (공편자: 남효순).
- 『새로운 금융법체제의 모색』, 도서출판 소화(2006.11) (공편자: 정순섭).
- 『지주회사와 법(보정판)』, 도서출판 소화(2008.6) (공편자: 노혁준) (초판: 2005.10).
- *Transforming Corporate Governance in East Asia*, Routledge (2008.7) (공편자: Hideki Kanda, Curtis Milhaupt).
- *German and Asian Perspectives on Company Law*, Mohr Siebeck (2016.12) (공편자: Holger Fleischer, Hideki Kanda, Peter Mülbart).
- *Issues and Challenges in Corporate and Capital Market Law: Germany and East Asia*, Mohr Siebeck (2018.6) (공편자: Holger Fleischer, Hideki Kanda, Peter Mülbart).
- *German and East Asian Perspectives on Corporate and Capital Market Law: Investors versus Companies*, Mohr Siebeck (2019) (공편자: Holger Fleischer, Hideki Kanda, Peter Mülbart).

3. 논문

- “Class Action 소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79.2).
- “the Demand on Directors Requirement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th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6 *Journal of Corporation Law* 511-529 (1981.10).
- “미국주식회사법”, 한미상사법비교연구(한미상사법비교연구회) (1982.6).
- “관계회사간의 거래와 조세회피”, 세무사 1985년 2월호(1985.2).
- “미연방증권법규상 증권의 정의”, 대한변호사협회지 1985년 8월호(1985.8).
-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8 *Journal of Comparative Business and Capital Market Law* 21-37 (1986.10).
- “회사의 정치헌금”, 법조 제35권 제2호(1986.10).
- “은행업무와 증권업무의 분리(1)”, 서울대학교 법학 제27권 제4호(1986.12).
- “회사법의 구조개혁”, 서울대학교 법학 제28권 제1호(1987.4).
- “무의결권주식에 대한 소고”, 증권 제52호(1987.7).

- “주식과 의결권 — 차등의결권주식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의 제문제』(임원택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법문사(1988.3).
- “미국 소비자신용법제의 개관”, 서울대학교 법학 제29권 제3·4호(1988.12).
- “리스계약의 운용실태”, 민사판례연구 제11집(1989.4).
- “명의개서의 해태와 무상발행신주의 귀속”, 판례월보 1989년 4월호(1989.4).
- “기업내용공시의 법적규제 — 적시공시를 중심으로 —”, 상장협 제19호(1989.5).
- “비엔나조약의 역사, 현상, 장래”, 상사법연구 제7권(1989.12).
-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민사판례연구 제12집(1990.4).
-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서울대학교 법학 제31권 제1·2호(1990.8).
-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과 중소기업”, 저스티스 제24권 제1호(1991.6).
- “고객의 주식을 보관하는 증권회사의 의무”, 인권과 정의 1991년 12월호(1991.12).
- “소수주주의 보호와 주주의 성실의무”, 서울대학교 법학 제32권 제3·4호(1991.12).
- “주주간의 이해상충에 관한 시론”, 한림법학포럼 제1호(1992.4).
- “콘체른에서의 소수주주보호”, 『기업법의 현대적 과제』(행술 이태로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조세통람사(1992).
- “리스거래에서 물건인수와 차수증의 발급이 갖는 의미”, 인권과 정의 1992년 11월호(1992.11).
- “부존재하는 주주총회결의에 기하여 선임된 대표이사와 거래한 제3자의 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제34권 제1호(1993.2).
- “불법행위법과 법정제한”, 민사판례연구 제15집(1993.4).
- “주주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서울대학교 법학 제34권 제2호(1993.8).
- “미국회사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서울대학교 법학 제34권 제3·4호(1993.12).
- “기업집단과 소수주주보호: 미국회사법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제25집(1994.6).
- “자기거래와 미국회사법의 절차적 접근방식”, 서울대학교 법학 제35권 제1호(1994.6).
- “미국증권법(I)”, 증권 제81호(1994.9).
- “미국증권법(II)”, 증권 제82호(1995.1).
- “재벌과 소수주주보호”, 『한국의 대기업: 누가 소유하며 어떻게 지배되는가?』, 기업구조연구회(1995.2).
- “미국증권법(III)”, 증권 제83호(1995.4).
- “미국의 법률가 양성제도”, 서울대학교 법학 제36권 제1호(1995.5).
- “우리나라 기업내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장협 제33호(1996.5).

- “내부통제 메커니즘의 법리적 고찰”, 정광선 편, 『21세기 한국기업의 통할체제』 (1996.7).
-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 일본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 제37권 제2호(1996.9).
- “지주회사규제의 재검토: 일본에서의 개정론을 중심으로”,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 강의』(1996.11).
- “미국의 증권예약결제제도”, 비교사법 제3권 제2호(1996.12).
- “증권회사직원의 이익보장약정과 투자자의 구제”, 민사판례연구 제19집(1997.2).
- “상호와 상표의 법적 보호”, 정상조 편, 『지적재산권법 강의』, 홍문사(1997.3).
- “개정증권거래법상의 공개매수제도”, 인권과 정의 제248호(1997.4).
- “독일의 회사지배와 은행: Mülbart교수의 법률가대회보고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38권 제1호(1997.5).
- “우리 상법의 성립사적, 비교법적 고찰: 총칙, 상행위편”, 『기업과 법』(도암 김교창 변호사 화갑기념 논문집), 한국사법행정학회(1997).
- “리스계약”, 『민법주해XVI』, 박영사(1997.7).
- “증권판례의 최근 동향”, 민사판례연구 제20집(1998.6).
- “금융자산의 증권화”, 상사법연구 제17권 제2호(1998.10) (공저자: 이중기).
- “새로운 경영감독체제의 모색”, 상장협 제38호(1998.10) (공저자: 윤영신).
- “회사형투자신탁과 투자자보호”, 『21세기 상사법의 전개』(하춘 정동윤 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법문사(1999).
- “이른바 워런트의 도입을 위한 소론”,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제1호(1999.5).
- “인터넷을 통한 증권거래와 증권거래법”, 인터넷 증권거래의 법제도적 기반에 관한 연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9.10).
- “집단적 증권투자의 구조”, 인권과 정의 1999년 10월호(1999.10).
- “글로벌시대의 자금조달 - 우리 자금조달법제의 국제적 적합성”, 국제거래법연구 제8집(1999.12).
- “지배주주의 통제방안: 행동, 구조, 시장”, 이선외 편,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재와 미래』, 미래경영개발연구원(2000.3) (공저자: 정승욱).
- “감사위원회,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이선외 편, 『한국 기업지배주주의 현재와 미래』, 미래경영개발연구원(2000.3) (공저자: 윤영신).
-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최기원 외 편, 『상사판례연구IV』, 박영사(2000.4).

- “2000년 개정증권거래법 해설”, 최기원 외 편, 『상사판례연구V』, 박영사(2000.4).
- “Controll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 Conduct, Structure and Market”, *Recent Transformations in Korea Law and Society* (Dae-Kyu Yoon ed.),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0.6) (공저자: Seung-Wook Jeong).
- “미국법상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판례실무연구 IV(2000.9).
- “기업변호사의 역할과 윤리”, 서울법대 편,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2000.9).
- “금융지주회사의 법적 규제”,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 강의II』, 법문사(2000.11).
- “벤처투자와 법적인프라”, 증권법연구 제1권 제1호(2000.12).
- “파생금융상품”, 민사판례연구 제23집(2001.2).
- “주식배당과 과세”,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 제4호(2001.2) (공저자: 이창희).
- “내부자거래규제의 이론적 기초”, 증권학회지 제28집(2001.6).
-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기업지배구조연구 제1호(2001.12).
- “회사법상 충실의무법리의 재검토”, 『(21세기) 한국상사법학의 과제와 전망』(심당 송상현 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박영사(2002).
- “이사의 배상책임보험”, 상장협 제45호(2002.3) (공저자: 최문희(주)).
- “준법감시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론”, 증권법연구 제3권 제1호(2002.6) (공저자: 안수현(주)).
- “Intermediary Risk in the Indirect Holding System: A Comment From the Perspective of a Civil Law Jurist”, 12 *Duk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335 (2002.10).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경쟁: 기업지배구조특별부의 신설을 제안하며”, 증권법연구 제3권 제2호(2002.12) (공저자: 스티븐 최).
- “Establishing a New Stock Market for Shareholder Value Oriented Firms in Korea”, 3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277 (2002.12) (공저자: Stephen Choi(주)).
- “채권결제제도의 개혁: 일본의 예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4권 제1호(2003.6) (공저자: 김이수).
- “자본제도와 유연한 회사법”, 이창희·장승화 편, 『절차적 정의와 법의 지배』, 박영사(2003.6).
- “Revamping Fiduciary Duties in Korea: Does Law Matter to Corporate Governance”, in Curtis Milhaupt ed., *Global Markets, Domestic Institutions*,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8) (공저자: Joongi Kim).

-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전환”, 강원법학 제16권(김정후 선생 정년기념 논문집) (2003.8).
- “이사의 주의의무과 경영판단원칙”, 민사판례연구 제26집(2004.2).
- “법적 시각에서 본 내부통제”, BFL 제4호(2004.3) (공저자: 안수현).
- “금융법통합작업의 추진현황 — 법제화방안을 중심으로”, 금융연구 제18권 별책 (2004.8) (공저자: 정순섭).
- “내부자거래와 내부정보의 이용”, 『상법연구의 향기』(정희철 교수 정년 20년 기념 논문집), 인산기념논문편집위원회(2004.10).
- “증권의 다양화에 관한 기초적 고찰”, 민사판례연구 제27집(2005.2).
-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환매의무”, BFL 제12호(2005.7).
- “법적 시각에서 본 감사위원회”, BFL 제13호(2005.9).
- “지주회사의 운영과 회사법: 총론적 고찰”, 『지주회사와 법』, 도서출판 소화(2005.10) (공저자: 노혁준(주)).
- “21세기를 맞는 우리 회사법과 회사법학: 그 한계와 과제”, 저스티스 제92호 (2006.7).
- “재벌총수의 사익추구행위와 회사법”, BFL 제19호(2006.9).
-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규제”, 김건식·정순섭 편, 『새로운 금융법체제의 모색』, 도서출판 소화(2006.11) (공저자: 정순섭(주)).
- “韓國における企業統治の轉換”, ソフトロー研究 제7호(日本 東京大學) (2006.11) (翻訳: 河南大徳).
- “Consolidation of Financial Services Laws in Korea: an Interim Report”, *Regulatory Reforms in the Age of Financial Consolidation* (Lee-Jay Cho & Joon-Kyung Kim ed.), KDI Press (2006.12) (공저자: 정순섭).
-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특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BFL 제23호(2007.5) (공저자: 최문희(주)).
- “구증권투자신탁업법상 판매회사의 환매의무”, BFL 제23호(2007.5).
- “경영자 보수와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연구 제33권(2007.7/8).
-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 상사판례연구 제7권, 박영사(2007.7).
- “Transplanting Audit Committees to Korean Soil: A Window into the Evolution of Korean Corporate Governance”, *9 Asian Pacific Law & Policy Journal* 163 (2007.12).

- “The Role of Judges in Corporate Governance: the Korean Experience”, *Transforming Corporate Governance in East Asia* (Hideki Kanda *et al.*, eds.), Routledge (2008.7).
- “Corporate Legal Personality and Corporate Loss in Korean Law”, *Festschrift für Klaus J. Hopt zum 70. Geburtstag am 24. August 2010: Unternehmen, Markt und Verantwortung*, Walter de Gruyter (2010.8).
- “도산에 임박한 회사와 이사의 의무”, *상사법연구* 제30권 제3호(2011.11).
- “영국 도산법의 부당거래와 부실기업 이사의 의무”, 『기업법·지식재산법의 새로운 지평』(진산 김문환 선생 정년기념 논문집) 제2권, 법문사(2011).
- “Invigorating Shareholder Derivative Actions in South Korea”, *The Derivative Action in Asia* (Dan W. Puchiniak *et al.*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7) (공저자: Hyeok-Joon Rho(주)).
- “기업지배구조”, 『회사법대계(I)』(2013.2).
- “企業支配構造の変化 — 日本・韓国・中国の経験を素材にして, 會社・金融・法(上) (岩原紳作외 편)”, *商事法務*(2013.11) (翻譯: 田中佑季).
- “Codification in East Asia: Commercial Law”, *Codification in East Asia* (Wen-Yeu Wang e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4.2).
- “Corporate Law and Corporate Law Scholarship in Korea: A Comparative Essay”, *Legal Innovations in Asia* (John O. Haley & Toshiko Takenaka eds.), Edward Elgar (2014.10).
- “법인격과 법인격부인원리”, *BFL* 제69호(2015.1).
- “Dynamics of shareholder power in Korea”, *Research Handbook on Shareholder Power* (Randall S. Thomas & Jennifer G. Hill eds.), Edward Elgar (2015.8).
- “주주총회 결의하자소송의 하자사유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34권 제3호(2015.11) (공저자: 최문희(주)).
- “삼성물산 합병 사례를 통해 본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과제 — 법, 제도, 문화”, *BFL* 제74호(2015.11).
-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 — 중국 기업지배구조의 서론적 고찰”, *중국법연구* 제28집(2016.5).
- “기업집단과 관계자거래”, *상사법연구* 제35권 제3호(2016.8).
- “Declining Relevance of Lawsuits on the Validity of Shareholder Resolution in Korea — A Comparative Essay German and Asian Perspectives on Company

Law”, in Holger Fleischer *et al.* eds., *German and Asian Perspectives on Company Law*, Mohr Siebeck (2016.12) (공저자: Moon-Hee Choi).

- “중국의 기업집단과 관계자거래”, 중국법연구 제31집(2017.8).
- “Varieties of Independent Directors in Asia: Divergent Convergence”, in Dan W. Puchniak *et al.*, *Independent Directors in Asia: A Historical, Contextual and Comparative Approa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11) (공저자: Dan W. Puchniak (교)).
- “자사주식 취득에 대한 회사의 금융지원”, 외법논집 제42권 제4호(2018.11).
- “이사회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 비교사법 제26권 제1호(통권84호) (2019.2).
-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 East Asia”, in Luca Enriques and Tobias Tröger eds., *The Law and Finance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6).

4. 서평

- “Robert Charles Clark, Corporate Law”, 서울대학교 법학 제28권 제1호(1987.4).

5. 번역

— 역서 —

- 『주식회사법리의 새로운 경향』, 경문사(1983) (공역자: 송상현) (원저: Melvin A. Eisenberg, *The Structure of the Corporation* (1976)).
- 『회사법의 해부』, 도서출판 소화(2014.7) (공역자: 노혁준, 박준, 송옥렬, 안수현, 윤영신, 천경훈, 최문희) (원저: Kraakman *et al.*, *Anatomy of Corporate Law* 2nd ed. 2009 Oxford).

— 논문 및 강연번역 —

- “EC내부자거래지침과 독일에서의 내부자거래법제정을 위한 몇 가지 고찰”, 국제거래법연구 제2집(1993.6) (원논문: Klaus J. Hopt, “EG-Vorgaben und Überlegungen für ein deutsches Insider-Gesetz”).
- “증권거래법의 역외적용”, 국제거래법연구 제3집(1994.4) (원논문: Misao Tatsuta, “Securities Regulation: Its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 “UR의 성과: 뉴질랜드의 입장”, 국제거래법연구 제4집(1995.5) (원논문: Gordon

- Anderson, “Agriculture and the Uruguay Round: A New Zealand Perspective”).
- “세계화시대의 법학교육”, 서울대학교 법학 제37권 제3·4호(1996.12) (원논문: Robert Clark, “How Many Lawyers? – A View Into the 21st Century”).
 - “세계화하는 기업지배: 형태상의 수렴인가 기능상의 수렴인가”, 서울대학교 법학 제38권 제3·4호(1997.12) (원논문: Ronald J. Gilson, “Globalizing Corporate Governance: Convergence of Form or Function”).
 - “이식된 법제도의 역할과 회사법”, 상사법연구 제21권 제3호(2002.10) (원논문: Curtis J. Milhaupt, “The Role of Legal Transplants in Corporate Law”).

6. 주요 연구용역보고서

- “우리나라 지주회사금지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1997.9) (공동연구자: 장지상, 최도성).
- “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 한국공인회계사회 보고서(1998.5) (공동연구자: 윤진수).
- “경제선진화를 위한 산업조직 개편방안연구: 재벌문제의 종합적 고찰과 정책대안의 모색”, 한국과학문화재단 프로젝트 보고서(2000.8) (공동연구원: 강철규 외 18명).
- “회계기준 및 준칙과 관련 법규와의 조화”, 금감원 연구보고서(2001.6) (공동연구원: 정운오, 이창희).
- “불공정거래규제시스템 실효성제고방안”, 한국증권거래소 용역보고서(2001.12) (공동연구자: 김화진, 권중호, 안수현).
- “금융분야부패방지대책”, 국무조정실 연구용역보고서(2001.12) (공동연구자: 이윤제, 안수현, 최문희, 김동환, 정재욱).
- “Template for the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 (ROSC)”, Corporate Governance Country Assessment (Republic of Korea), World Bank (2002.3).
- “불공정거래 재재수단의 강화방안”, 한국증권법학회(2002.3) (공동연구자: 우영호, 송용순, 정윤모).
- “상장법인의 배당제도 개선”, 투자자보호강화를 위한 증시제도 개선방안, 한국증권법학회(2002.7) (공동연구자: 안수현).
-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 한국증권연구원(2002.9) (공동연구자: 우영호, 정윤모, 김문현, 엄경식, 이준섭).
- “한국증권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증권거래법 개편방안”, 한국증권법학회(2002.10)

(공동연구자: 강희철, 고창현, 권종호, 김건식, 김상규, 김화진, 송종준, 안수현, 오영근, 이준섭, 이중기, 정순섭, 하규수, Hilgendorf).

- “기업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유가증권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거래소 연구프로젝트 보고서(2003.6) (공동연구자: 윤영신, 안수현, 정순섭).
- “기업지배권시장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거래소 연구용역보고서(2004.8) (공동연구자: 송종준, 송옥렬).
- “증권거래법의 역외적용 및 외국감독기관과의 공조제도 정비방안 연구”, 금융감독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2004.10) (공동연구자: 정순섭).
- “금융관계 법률의 체계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거래소 연구용역보고서(2004.12) (공동연구자: 노혁준, 심영, 안수현, 윤영신, 이원우, 이중기, 정순섭, 최문희, 한기정).
- “금융상품의 복잡화·다양화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강화방안연구”, 재정경제부 용역보고서(2006.4) (공동연구자: 정순섭, 최성근).
- “ABS의 진정양도 요건에 관한 연구”, 금융감독원 용역보고서(2006.11) (공동연구자: 정순섭).
- “상장법인 특례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무부 용역보고서(2006.12) (공동연구자: 최문희).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법적 LBO 가이드라인 제정방안”,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2011.12) (공동연구자: 송옥렬, 이상원).
- “금융감독 선진화를 위한 감독체계 개편 방안”, 국무총리실 용역보고서(2012.10) (공동연구자: 박준, 송옥렬, 조재호, 이원우, 정순섭, 한기정, 김선구).
- “상호주보유와 순환출자개선에 관한 연구”, 법무부 용역보고서(2012.12) (공동연구자: 천경훈).